

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번호	33
------	----

제출년월일 : 2006. 11. 2.
제출자 : 평창군수

1. 제안이유

- 중앙부처 권고에 의하여 승인된 복식부기의 한시정원 존속기한이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정착과 안정적 운영 등을 위하여 연장 승인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.

2. 주요골자

- 직급별 한시정원 존속기한 연장(부칙 제2조제2항 개정)
 - ▶ 복식부기의 직급별 정원 6급 1명, 7급 1명, 8급 1명의 존속기한을 당초 2006. 12. 31에서 2008. 12. 31까지 2년 연장

3. 참고사항

- 가. 가. 관련법령 : 별첨
- 나. 신·구조문대비표 : 별첨
- 다. 예산조치 : 해당없음.
- 라. 관계부서승인 : 강원도 총무과 - 21747(2006.10.20)
- 마. 입법예고 :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의거 생략

평창군조례 제 호

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조례 제1789호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2조
제2항 중 “6급 1명, 7급 1명, 8급 1명(복식부기 3명)은 2006년 12월
31일까지”를 “6급 1명, 7급 1명, 8급 1명(복식부기 3명)은 2008년 12
월 31일까지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관 계 법 령 발 췌

□ 지방자치법

제103조(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) ①지방자치단체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경비로써 부담하는 지방공무원을 두되, 그 정원은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□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

제21조(정원의 규정) ①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1. ~ 5. (생략)

②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의 총수의 범위 안에서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관리기관별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③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의 총수의 범위 안에서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관리기관별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.